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 국

미 법무부, Harsco Corporation의 철도 유지보수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산매각 요구

미국 법무부는 14일, Harsco Corporation이 Pandrol Jackson Inc.와 Pandrol Jackson Limited의 일정자산을 8,900만 달러로 취득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동 부의 경쟁상 우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 기업이 철도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기계류 및 서비스를 매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법무부는 당해 취득계획이 원안대로 이루어질 경우 이는 반경쟁적이어서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인상 및 품질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법무부 반트러스트 제소 및 동의명령 제안은 워싱턴 D.C.소재 연방법원에 접수되었다. 이 동의명령이 법원의 인가를 받을 경우 당해 소송은 화해로 끝나게 된다.

소장에 따르면 당해 기업결합 제안

은 경쟁을 상당히 감소시키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Harsco사와 Pandrol사는 전철기, 건널목 및 통과 시스템 연마기기를 제조하며 북미지역에서 전철기 및 건널목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두 업체이기 때문이다. 전철기 및 건널목 연마기기는 선로와 통과 시스템을 원형으로 복원시키기 위해 고안된 기계로서 열차바퀴가 선로에 맞닿으면서 발생하는 변형을 수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Joel I. Klein 반트러스트국장은 "이러한 자산매각이 없으면 철로 및 통과 시스템은 이러한 종류의 철로 유지보수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하여 단 하나의 선택안밖에 없게 되었을 것이다. 이 자산매각이 이루어지면 철로 및 통과 시스템이 이들 제품에 대한 경쟁의 이익을 계속 향유하는 것이 보장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동의명령에 따르면 Harsco사는 Pandrol사의 전철기 및 건널목, 통과 시스템 연마기기 자산을 법무부의 제소일로부터 30일 내에 매각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당해 자산매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Harsco사에 30일을 추가허용할 수 있지만 만일 Harsco사가 자산매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법무부가 지명하는 신탁인이

Pandrol 사 자산매각을 위해 선임될 것이다.

펜실베니아 주 Camp Hill에 본사를 두고 있는 Harsco사는 미네소타 주 Fairmont에서 전철기, 건널목 및 통과 시스템 연마기기를 제조하고 있으며 북미 전지역에서 전철기 및 건널목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도에 Harsco사는 대략 17억 달러의 연간매출을 기록했다.

Pandrol사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시간 주 Ludington 공장에서 전철기, 건널목 및 통과 시스템 연마기기를 제조하고 있고 뉴욕 주 Syracuse 공장에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8년에 Pandrol사는 약 1억 100만 달러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 '99. 10. 14, 미 법무부 보도

캐나다

캐나다 연방법원, 비타민 국제적 카르텔 행위에 벌금 부과

캐나다 경쟁당국은 지난 9월 22일, 캐나다 연방법원이 캐나다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종류의 비타민 및 식품첨가제에 대한 가격결정과 시장점유율에 대한 카르텔을 하였다하여 총 8,840만 캐나다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캐나다 경쟁법상 최대의 벌금형이다.

스위스의 로슈사, 독일의 BASF사, 프랑스의 로누 프란사와 일본의 예사이(주)와 제1제약(주)가 '90년 1월부터 '99년 2월까지 캐나다 경쟁법에 위반되는 국제적 카르텔을 하였다하여 각각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벌금과는 별도로 법원은 각 사에 대하여 캐나다에서 10년간 경쟁법 위반 행위 또는 재위반을 금지하는 금지명령도 내렸다.

콘라트 혼 켄슈타인 경쟁국 장관은 "모든 캐나다인은 비타민 원료에 관한 국제적 공모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이번 유죄판결은 경쟁국이 국외에서의 캐나다 소비자를 노린 국제적 카르텔에 참가한 사업자를 엄하게 소추하게 된 주요한 메시지를 산업계에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보아 넘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로슈사는 총 5,090만 캐나다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이중 4,800만달러는 비타민 원료에 대한 위반분이다. 동 사는 '91년부터 '95년까지의 쿠엔산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아 290만 캐나다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쿠엔산의 유죄판결은 합계 860만 캐나다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ADM · Haarmdn & Reimer 및

Jungbunlaur사와 함께 공모한 것이다.

BASF사는 비타민에 대해서 1,800만 캐나다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첨가하여 법원은 코린 염화물에 대한 카르텔에도 참가하였다하여 100천 캐나다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 공모는 '92년에서 '95년까지 새와 돼지 사료의 첨가물인 염화물을 캐나다 시장에 공급하지 않기로 타사업자와 협정한 것이다.

법원은 비타민 A 및 E에 관한 공모에 관해서 로누 프란사에 1,400만 캐나다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일본의 제일제약(주)는 비타민 B5 및 B6에 대해서 예사이(주)는 비타민 E에 대해서 각각 250만 및 200만 캐나다달러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이 공모는 식품, 사료 및 의약품에서 가장 많은 범위로 쓰이고 있는 비타민인 A, B2, B5, B6, C, E, 베타카로틴 및 비타민 혼합제를 포함한 비타민관련 제품의 판매량 할당 및 가격인상을 의도한 것이다. 상기 제조업자에 의한 비타민 원료의 캐나다에서의 판매액은 공모기간 중 6억5000만 캐나다달러에서 7억 캐나다달러로 증가했다.

쿠엔산에 대한 조사는 유죄판결로 완결되었으나, 코린 염화물 및 비타민 원료에 대한 조사는 현재 계속 진행중이다.

■ '99. 9. 23, 캐나다 경쟁국 보도

E U

유럽위원회, 엑슨사 - 모빌사 기업결합 인가

유럽위원회는 9월 29일, 세계 최대의 석유 공기업인 탄생시계기 될 엑슨사의 모빌사 인수계획에 대하여, 이들 기업이 경쟁 보존을 위해 유럽 내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인가하였다.

동 위원회는 이들 기업이 당해 요건에 합의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기업결합은 또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건들 중 핵심적인 것은 모빌사가 유럽 내에서 휘발유 및 기타 제품을 정제 및 마케팅하기 위해 BP Amoco사와 공동설립한 합작투자사업의 30% 지분을 매각하라는 것이다. BP Amoco사는 모빌사와 당해 합작투자사업의 장래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하였다. Donaldson, Lufkin & Jenrette사의 석유산업 분석가인 John D. Hervey는 이들 자산의 장부가치가 약 17억 달러로서, 이는 BP Amoco사의 매수가격으로서는 적정하다고 하였다.

엑슨사와 모빌사는 1998년 12월 당시 800억달러로 평가된 주식거래를 통해 기업결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것이 성사되면 1,470억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전세계적인 초대형 석유회사가 탄생하게 된다.

Hervey는 "이번 결정은 놀랄 것이 아니다. 이들 기업은 BP와의 합작투자사업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유럽연합의 집행부격인 유럽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처음에 통지된 대로 당해 기업결합은 8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 내지 강화하게 될 것이다. 엑슨사와 모빌사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서약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FTC의 집행관리들과는 아직 협상단계에 있다.

미국에서는 논의가 휘발유의 정제 및 마케팅에 집중되었다. FTC는 이들 두 기업이 캘리포니아 주의 주요 정유소뿐만 아니라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주와 북동부 지역에 소재한 약 1,500여개의 정유소를 매각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캘리포니아 주는 청정휘발유를 사용하며, 이를 정제할 수 있는 정유소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유소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FTC 관리들은 정유소에 대한 통제가 더이상 집중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FTC에서의 협상과정에 참여하여 온 커넥티컷 주의 법무장관인 Richard Blumenthal은 진전이 있었다고 주초에 행해진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엑슨사가 "주정부들과 연방정부로부터 당해 기업결합 인가를 받으려면 상당한 자산매각이 있어야 함"을 깨

달았다고 하였다.

엑슨사의 회장인 Lee R. Raymond는 이번 유럽위원회의 인가는 "당해 기업결합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들 기업이 FTC와 관련 주정부 법무장관들과의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위원회 인가 조건의 일부로 엑슨사와 모빌사는 다음의 내용에 합의하였다:

① 모빌사는 독일내 합작법인인 마케팅 회사로서 상당수의 휘발유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Aral사의 28% 지분을 매각한다.

② 엑슨사와 모빌사는 유럽 내 운할유 제조부문의 일정지분을 매각한다.

③ 모빌사는 런던 근교 개트워 공항에 유류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시설을 매각한다.

④ 엑슨사는 전세계 상업항공기용 윤활유 사업부문 관련자산을 매각한다.

또한 유럽의 천연가스 마케팅에 영향을 줄 변경도 발표되었는데, 이에 모빌사의 네덜란드내 가스상사인 Megas사의 매각과 엑슨사의 서부 독일 가스 유통회사인 Thyssengas사 지분 25% 매각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유럽위원회는 예상되던 대로 BP Amoco사가 327억 달러 규모로 ARCO사를 인수하겠다는 계획도 인가하였다. 이 인가는 BP사의 영국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지분 매각을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 '99. 9. 30, The New York Times

유럽위원회, TotalFina사 - Elf Aquitaine사 기업결합 조사할 듯

유럽위원회는 TotalFina사가 제출한 프랑스 석유회사 Elf Aquitaine사에 대한 490억 유로화(520억 달러) 규모의 인수제안에 관한 동 위원회의 우려를 동 기업이 불식시키지 못함에 따라, 6일 전면적 반트러스트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위원회의 전면적 조사 결정은 당해 기업결합에 대한 인가를 최대 4개월간 지연시킬 수 있다. 인가를 얻기 위해 이들 기업은 자산의 상당한 부분을 매각하여야만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동 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주 TotalFina사 회장인 Thierry Desmarest와 EU 경쟁담당위원인 Mario Monti가 이들 기업의 프랑스 내에서의 시장집중을 억제시킬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회합 이후에 내려진 것인데, 기업결합 이후 동 기업은 프랑스에서 Total사와 Elf사의 소매 유통망과 상표명을 모두 보유하게 될 것이다.

Desmarest 회장은 3개 부문 - 고속도로변 주유소, 송유관 및 액화석유가스 - 에서 사업을 철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유럽위원회의 요구에 못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TotalFina사는 5일밤 동 기업의 Elf사 인수제안이 당해 조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인수제안은 여전히 10월 15일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10월 27일에 공표될 것이다.

이들 기업의 통합이사회 및 선임부장들로 구성될 새로운 집행위원회는 유럽위원회가 당해기업결합을 인가하기 전까지는 회합하기 어려울 것이다. TotalFina사의 임원들은 이 시기를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다.

EU 반트러스트당국은 지나치게 시장력을 소수의 기업에 집중시키는 기업결합에 대해 점점 우려를 표명하여 왔다. 일련의 석유회사간 기업결합은, 그 결과 탄생하게 될 기업의 규모 및 유럽의 에너지 공급체인에의 대부분에 대한 이들 기업의 광범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특히 주의를 끌었다.

지난 주에 유럽위원회는 미국 석유회사인 엑슨사와 모빌사간의 기업결합을 인가하였지만, 이는 이들 기업이 유럽 주유소 체인, 천연가스 및 운할유 사업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자산매각에 동의한 이후에야 내려졌다.

TotalFina사와 Elf사의 기업결합 후 탄생할 기업은 "France Oil"이라 통칭되고 있는데, 프랑스 최대의 회사이자 전세계 4위의 석유그룹이 될 것이지만, 이른바 슈퍼리그를 이룬 "빅3" - 엑슨/모빌, Royal Dutch/Shell, 미국 Arco사 인수 후의 BP Amoco - 보다는 여전히 규모가 상당히 작을 것이다.

■ '99. 10. 6, Financial Times

이탈리아 경쟁당국, 석유 가격고정 조사 일환으로 석유회사 수색

석유 가격고정 주장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면서 국제적 석유생산업체들의 이탈리아 사무실이 14일 이탈리아 경쟁당국으로부터 수색을 받았다.

경쟁당국은 5개 국제 석유생산업체들 - Esso, Fina, Kuwait, Shell 및 Tamoil - 이 이탈리아 주요 석유 유통업체들과 연계하여 석유가격을 고정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하였다.

경쟁당국은 4개 이탈리아 석유생산업체들 - 이들 중 2개사는 이탈리아 Eni 그룹의 자회사인 - 및 이탈리아 주요 유통업체들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조사하고 있다고 하였다.

관련 석유회사들은 즉각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반경쟁적 관행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생각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탈리아 석유생산업체들을 대표하는 기구인 Unione Petrolifera는 언급하였다.

경쟁당국 의장인 Giuseppe Tesauro는 당해 조사는 이탈리아 석유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유통단계에서 가격의 변동이 적었다는 소비자들로부터의 점증하는 이의제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경쟁당국은 이탈리아 세전 석유가격이 유럽연합 평균치보다 11% 높았으며 슈퍼마켓에서의 석유 판매로 경

쟁이 확대되리라는 희망도 정부가 이를 금지함으로써 꺾었다고 하였다.

경쟁당국의 이번 조사는 최종 판정이 내려지는 내년 5월까지 지속될 것이다. 동 당국은 14일 이탈리아 석유생산업체들이 설정한 석유가격은 1991년과 1996년 사이에 "상당정도의 수렴성"을 보였으며 이는 최근까지 이어졌다고 하였다. 석유생산업체들은 유통업체들이 연료 권장소매가격을 변경할 유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통업체들과 회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 '99. 10. 15, Financial Times

일 본

공취위, 환경대응 기업협조에 대해 독점법운용 탄력화 검토

공정취인위원회는 수명이 다한 제품의 재활용 등 기업의 환경문제에의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의 운용을 탄력화한다. 소비자로부터의 폐품 회수에 대해 복수의 기업이 유료로 회수할 것을 상의하는 등 협조행동을 취한 경우, 회수가격을 통일하지 않고 신제품 판매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독점법 위반으로 하지 않는 안이 유력하다. 부품 등의 재자원화를 진행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업계가 형태 및 색 등을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통일하는 것도 용인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며, 2000년도를 목표로 운용지침을 공표하게 된다.

공취위는 기업의 환경대책과 독금법과의 관계를 검토할 연구회를 내년 봄에라도 발족시킬 계획이다.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및 산업계 대표가 기업의 환경대책을 촉진하기 위해 독금법의 운용을 어떤 식으로 탄력화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 이 성과를 근거로 운용지침을 정리하게 된다.

지침은 기업끼리의 협정 중 명백히 독금법 위반이 되는 것, 경쟁을 저해하지 않아 위반이 되지 않는 것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명시한다. 기업이 독금법 위반을 우려하여 유해물질의 식감 및 폐품 재활용 등을 주저하는 것을 예방하지는 것이다.

운용지침에서는 예를 들어 자동차 업계가 자동차 에어컨의 냉매로 사용되는 프레온가스를 소비자로부터 유료로 회수할 것을 결정한 경우, 수거가격을 통일하지 않는다면 독금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등을 명시한다. 프레온가스의 유료회수가 자동차 자체의 판매경쟁에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2000년도부터는 종이, 플라스틱제 용기의 재활용이 제조업체 및 판매점의 법적 의무로 부과되고, 2001년도에는 가전제품의 부품 및 소재도 재활용 의무화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같은 업종의 기업끼리 수명을 다한 제품의 회수비용 등을 삭감하기 위해 폐품회수의 유료화 및 제품형상의 통

일 등으로 협조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예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기업으로서의 업계내의 결정이 독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 우려의 원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은 공취위에의 사전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을 바랄 수 밖에 없었다.

■ '99. 10. 5,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체 22개사 수주담합 혐의로 경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농촌 군집부락 오수처리시설의 건설공사를 둘러싸고 제조업체들이 담합으로 수주조정을 행하여 왔다는 혐의가 있어, 공정취인위원회는 에바라(荏原), 구보타, 구리모토(栗本) 철공소, 대일본 인키화학공업, 유니모카 등 9개사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위반(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경고하였다.

또한, 규슈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서도 대일본 인키사를 제외한 8개사에 13개사를 더한 합계 21개사에 담합 혐의가 있어, 공취위는 동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경고하였다.

공취위의 조사에서는 에바라사 등 9개사가 발주가 예상되는 전국 오수처리시설 중에서 자사가 희망하는 공사를 해마다 사전등록하고, 입찰시에는 등록된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협력하였음이 밝혀졌다. 수

주조정은 1991~1996년도 중 1995년도를 제외한 각 연도마다 행하여졌고, 1998년도에 또다시 실시하려 하였으나 일부 회사의 반대로 중지되었다.

규슈 지방에서는 작년 수주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기 위한 회합이 열려, 구체적인 규칙을 검토하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한다.

■ '99. 10. 6,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교과서편제 규제와 관련하여 업계에 배재권고

초중고교의 교과서 편집을 둘러싸고 업계단체인 사단법인 「교과서협회」가 교과서의 페이지 수 등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각 사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10월 8일, 동 협회에 독점금지법 위반(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으로 배재권고를 하였다. 문부성에 대하여서도 동 협회와의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다.

공취위의 조사에 따르면, 교과서회사 55개사가 가입하고 있는 동 협회에서 교과서의 크기, 종이의 질, 페이지 수 등의 편제에 대하여 문부성의 양해를 얻은 후에 업계 자율규칙으로서 1958년경부터 「표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1989년에 학습지도요강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부록 및 색상상쇄 페이지 수의 비율 등을 재검토, 각 사에 새로운 「표준」을 통지하였다.

동 협회에서는 그 이후 각 사에 매년 교과서의 편제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표준」에 적합한가를 체크, 합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사에 이를 변경하도록 요청하였다. 공취위의 조사에서는 동 협회가 1995~1998년에 변경시킨 것이 합계 27개사, 79건에 달하고 있다.

문부성에 따르면 1948년도 교과서 검정제도가 시작된 당초에는 편제도 검정대상이었으나 1958년에 대상에서 제외, 동 협회에서 「표준」을 작성하게 되었다. 페이지 수 증대에 따른 비용 증대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초래하는 것 등을 배려하는 외에, 각사의 경쟁이 격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1989년 「표준」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동 협회는 내용을 문부성에 보고하였다. 동 성은 독금법에 저촉할 우려가 없는지 공취위측과 상담하였으며, 공취위에서는 「표준」을 작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각사의 편제를 체크한다거나 변경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것을 회답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공취위에서는 동 협회의 요청행위가 행하여진 것은 기업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사의 자유로운 편집제작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 동 협회에 「표준」이 각 사 편집의 참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 협회 사무국은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교과서의 수준을 가입 각사마다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해를 구하여 왔으며, 이번의 권

고를 엄숙히 받아들여 앞으로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다.

한편 문부성 교과서과는 「자유규칙이 강제되 지 않도록 지도, 조언하여 가겠다. 지나치게 두꺼워서 내용을 소화할 수 없다든지 무겁다든지 하는 경우, 교과서로는 편하게 쓰기에 좋지 않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에 다양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자유규칙에 일정한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교재를 둘러싼 독금법 위반사건으로는 공취위가 1997년 12월,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연습 및 시험문제 등 부교재의 페이지 수 등의 규격과 소매가격의 인상폭에서 암묵적 카르텔을 결성하고 있었다고 하여 도서교재 출판회사 6개사에 배제권고를 한 예가 있으며, 1998년 6월에도 교재출판회사 15개사에 대하여 중학교용 학습교재의 가격 및 인상폭에 관한 암묵적 카르텔에 대하여 배제권고를 한 일이 있다.

■ '99. 10. 9, 요미우리신문

공취위, 연료담합 의혹으로 석유판매 11개사 고발

방위청 조달실시본부(이하 "조본"이라 한다)가 발주한 제트연료 등을 둘러싼 담합사건에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총장에 형사고발당한 석유판매회사 11개사의 1998년까지 3년간의 낙찰수량 시장점유율은 거의 일

정하게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13일 밝혀졌다. 관계자는 담합은 각 사의 담당자가 벌린 도쿄내의 임대회의실에서 행하여져 왔다고 밝혔다.

고발을 접수한 검찰당국은 동경고검이 지휘하며, 도쿄지검 특수부가 실제의 조사를 담당한다. 낙찰업체와 낙찰가격의 결정과정에 관하여 각사가 어떻게 관여하였는가 등 담합 전 내용을 해명할 방침일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대상이 된 업체는 닛세키미츠비시(日石三菱), 코스모석유, 재팬에너지, 쇼와(昭和)셀석유, 제네럴석유, 이데미츠코산(出光興産), 규슈석유, 키그나스석유, 다이요(太陽)석유, 후소(扶桑)석유, 다이호공업이다(모두 본사는 도쿄). 이들 11개사는 조본 발주의 항공터빈연료와 자위대기지 등에서 사용되는 가솔린 및 중유 등의 지명경쟁입찰에서 사전에 낙찰가격과 낙찰업체를 결정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계자료 등에 따르면 1998년까지 3년간에 걸쳐 각 석유판매회사는 항공자위대의 치토세(千歳)기지 등 전국 18개소에서 사용되는 항공터빈연료(제트연료) 등에 대하여 조본에서 합계 약 155만킬로리터, 약 485억엔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각사별 계약상황에 따르면 「1위: 코스모석유, 2위: 닛폰석유(당시), 3위: 이데미츠코산」의 순위는 불변이었다. 시장점유율도 코스모석유 22.5~24.3%, 닛세키 16.8~18.9%, 이데미츠 11.1~12.0%로서 거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였으며, 이들 3사에서 전체의

절반을 접하여 왔다.

4위 이하는 미츠비시석유(당시, 점유율 7.8~8.7%), 재팬에너지(7.2~8.9%), 제네럴석유(6.4~8.7%), 쇼와셀석유(5.6~7.2%), 규슈석유(1.7~2.3%), 키그나스석유(1.5~1.8%) 등으로, 회사별 순위와 시장점유율 모두 거의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조본은 제트연료 등에 대하여 연간 5회 정도의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며, 각 사는 각각의 낙찰수량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도쿄내 임대회의실 등에 모여 각지의 항공자위대기지별로 낙찰회사를 논의를 통해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판명된 시장점유율 데이터에 대하여 관계자들은 「보통의 경쟁입찰로 하면 이렇게 시장점유율 순위가 고정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취위의 이제까지의 조사 등에서, 업체측은 사전결정된 낙찰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도록 하기 위해 조본이 설정한 저가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응찰하여 입찰 자체를 불성립시켜 끝나게 하거나, 결산담당자로 되어 있던 코스모석유의 영업담당간부가 조본의 담당자와 교섭을 행하여 업계의 희망가격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져 있다.

■ '99. 10. 14, 산케이신문

기 타

독점정책 관련 미·일 협정, 기업활동의 국제화에 대응

미·일 양국정부는 일본 시간으로 8일 새벽, 독점금지정책에 관한 양국간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정보교환을 활성화함과 더불어 상대국 시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방 당국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국경을 초월한 대형 기업결합·제휴가 잇달고 있으며 기업활동이 글로벌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금년 5월 미·일 정상회담시에 기본합의는 이루어져 있었다. 독점금지정책에 관하여 일본이 양국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최초의 일이다.

협정은 상대국의 산업 등 이해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대국에 신속하게 통지하는 외에, 양국 모두에 관계되는 안건에 대한 심사는 양국간에 조정을 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상대국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대국에 적절한 심사를 행하여 주도록 요구할 권리도 인정하고 있다.

■ '99. 10. 8, 일본경제신문